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25호 2019. 3. 13(수)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35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37호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 1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감정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 1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4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안 ----- 2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4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 2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	-----	3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4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48호	인천광역시 서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46

<b>규 칙</b>
------------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5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49
--------------------	---------------------------------------	-------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35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원 1명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007,980원으로 한다.”을 “의원 1명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9년도에는 월 2,060,18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36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공시설 및 산업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4. “산업기반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 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산업인프라”란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문화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공시설·산업기반시설이 적용대상이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업환경 개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공공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산업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반시설 지원) 구청장은 기업활동 촉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공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기업인 간담회, 기업체 현장 방문, 전화·인터넷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체 정비사업 지원) 구청장은 기업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공업지역 내 협의회를 포함한 기업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성·공공성·개선효과·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37호

###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mu\text{m}$ )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mu\text{m}$ )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 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농도”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8.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 사

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본계획의 지원)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오염경보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비상저감조치가 예보·발령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그 내용을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제13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설 설치
2.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 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3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제4조(지원 기준)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하며,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위해 지급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센터 발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9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3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감정근로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40호

###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감정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감정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정근로”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근로자(이하 “감정근로자”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관에서 감정근로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근로 채용자(이하 “감정근로 채용자”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근로 채용자와 감정근로자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

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으로 근무하는 감정근로자, 감정근로 채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근로자를 보호하고 감정근로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근로자의 권리 존중) 감정근로자는 감정근로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근로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근로자 보호 및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근로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근로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근로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근로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침의 배포) ① 구청장은 감정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근로자의 권리보호

2. 감정근로 채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근로자의 근무처에 지침을 배포하고, 근무처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각 기관(부서)과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근무처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근로자 권리보장교육) ① 구청장은 감정근로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감정근로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구청장은 감정근로자가 감정근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 휴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감정근로자 상담 및 보호) ① 구청장은 감정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근로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정근로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근로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감정근로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부서) 내 고객과 감정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감정근로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근로자 기준 설정
3. 감정근로자 권리보장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감정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41호

###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장(이하 “구민장”이라 한다)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구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구 소속 공무원 및 서구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제3조(심의회) ① 구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사회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장례위원회)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고문) ① 장례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례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장이 되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장례기간 등)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장례비용)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조기계양) 구민장의 기간 중에는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는 구

기를 조기로 계양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장례비 기준 (제13조 관련)

사 항 별	규 격	수 량	비 고
신 문 공 고	3단 15cm	1회	일간지(2개사 이내)
영결식장 설치	면적 6m×3m=18㎡ 높이 3m	1식	
헌화용 꽃 및 근조 리본 등 가. 영정사진 나. 헌화용 꽃 다. 근조리본 라. 넥타이 마. 장갑 바. 영구차 리본	대 백색국화 흑 색 흑 색 백 색 대 형	1개 500송이 이하 500개 이하 30개 이하 200개 이하 1개	주문객용 유족종사원·주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 화	대 형	1개	장례위원장 명의
안내문 인쇄	모조 32절 180g/㎡	1,000부	
영 구 차	리 무 진 대 형	1대 1대	1일간
현 수 막	게시대용	10매 이내	
장례행사 협조기관 가. 조약대 나. 경호 및 경비	차량	2대 이내	필요시 필요시
기 타 비 용	영결식 기자재 등	1식	음향시설, 텐트 등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42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구성·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5.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 돌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4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어린이

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현황
3. 어린이집 통학버스 실태조사
4.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
5.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4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복지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구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 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성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3.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대표 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

판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45호

###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지명한다”를 “위촉·임명하되, 담당 국장, 보건소 의무사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한다.

제6조제5항 후단 중 “생활보장과장”을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46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소유자의 과반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붙이”를 “부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건축,”을 “주택관리,”로, “주민대표”를 “주민대표로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센터담당”을 “주택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47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축과장, 서무는 공동주택관리센터담당”을 “주택관리과장, 서무는 주택관리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을 “대리인”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방역취약계층 방문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48호

### 인천광역시 서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서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3. “대상주택”이란 서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제8조 관련)**○ 서구 보건소  
(서명)

방문 방역자 :

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상세하게기재)	처 리		방역확인 (신청자)
					예정일	완료일	
1							
2							
3							
4							
5							
6							
7							
8							
9							
1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4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엔딩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엔딩노트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58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목구입, 식재사업 및 전지사업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축과장”을 각각 “주택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관리 담당 부서장”로 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 중 “홈페이지”를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회장과 공동주택관리소장 공동명의로의 공동주택 관리”를 “명의로(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또는 대표자 명의로(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리규약”을 “관리규약 및 자체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b>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b>								
신청인	공동주택 단지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연 락 처	집 또는 사무실 :				사용검사일		
		핸드폰 :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사 업 개 요			보조금 결정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통보액	산출비 율 (%)	계	보조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인천광역시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19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b>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b>								
<b>※ 구비서류</b>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중·후 사진								

